

# 定 款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이하“본회”)라 한다.

##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88-44 한남빌딩 211호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3 조 (목 적)

본회는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배달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한국 고유의 무예문화인 수박의 발굴, 보존, 연구, 개발, 계승을 통하여 전통 문화를 창달하고 국민의 건강한 심신을 함양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나아가 우리 민족이 21세기 인류문명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적역량을 배양케 하고 국익의 증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며 상생공영과 홍익인간의 민족이념을 전파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와 행복에 공헌하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수박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결정
2. 수박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및 소청
3. 지부 및 산하단체의 관리 및 감독
4. 수박 보급(지도자 육성, 대중화)
5. 국내외의 경기회 및 심사회, 연수, 교육, 시연, 강습회 등 각종행사의 개최 및 주관
6. 기능보유자 및 우수한 선수자, 수박 선수단체에 대한 선수활동 지원
7. 수박의 기술연구, 자료수집, 조사통계
8. 수박에 관한 전문서적, 간행물 발간과 영상물 제작
9. 수박에 대한 홍보 및 계몽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9 조 (회원의 상벌)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9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 제 11 조 (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13 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 14 조 (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6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 17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4 장 총 회

###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 19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0 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21 조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제 23 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5 장 이 사 회

####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27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28 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 29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 30 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1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 32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3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34 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 35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6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사무부서

#### 제 38 조 (사무국)

-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 39 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 40 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1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2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 3 조 (설립 당초의 임원)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회장	송 기 송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98-414
이사	송 창 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1동 440-16
	권 용 암	서울 금천구 독산 4동 198-39
	윤 종 현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354-194
	송 원 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달빛마을 201동 1004호
	유 재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혜성 APT 308호
감사	양 차 순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1520-21

제 4 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 회원은 별지 2와 같다.

제 5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